

예산총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03,364,513	27,100,935
일반회계	833,880,465	25,016,414
특별회계	69,484,048	2,084,521
공기업특별회계	35,152,045	1,054,56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558,241	556,74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593,804	497,814
기타특별회계	34,332,003	1,029,96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033,843	241,01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61,483	91,844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613,905	78,417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3,866,000	115,98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771,400	23,142
도시개발특별회계	14,000	42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020,518	60,616
중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447,184	13,416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5,660,375	169,811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7,414,195	222,426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29,100	12,87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사"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사"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071,32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9,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